

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 제목“(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)”을“(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)”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중“관서당경비”를“일상경비”로 하고, 동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제3항은 이를 삭제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 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(수리·제조)할 수 있다.

제28조의 제목“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)”를“(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)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중“물품검사조서에 의하여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”를“물품검사조서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한다”로 하며, 동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.

별표1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(1)비품 ②를“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30만원 이상의 물품”으로 하고, 같은표 같은란중 (2)소모품 ④를“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0만원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·파손되기 쉬운 물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276호
- 다. 제출일자 : 1999년 5월 20일
- 라. 회부일자 : 1999년 5월 24일

2. 제안이유

은닉재산 신고절차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의 구비서류 요구사항을 생략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재산 사용시의 자치법규 상호간 중복되는 허가조건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은닉재산 신고시 신고와 관련된 각종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

급시 인감증명서와 각서제출의무를 폐지함.(안 제6조)

-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당해재산의 사용에 대한 일률적이고 불합리한 의무적 조건부여 사항을 폐지함.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재정법

제88조(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)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○ 공유재산관리조례

제6조(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)

①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(이하 “은닉재산”이라 한다)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(이하 “신고인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99.1.15)

1. 보상금액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20 상당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보상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.

2.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.

② 신고인은 은닉재산 신고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보상금은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산형편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용허가 조건)

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.

- 1. 사용목적
- 2. 사용기간
- 3. 사용료
- 4. 사용료 납부방법
- 5. 손해보험증서 제출